

의안번호	2207800
의 퇴 인	최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2. 6.
추계번호	25F0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52.6억 원, 2035년 26.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1,062.5억 원(연평균 11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소득세, 2027~2035년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제1항)	21.2	40.3	57.1	62.2	66.6	47.4	30	14.4	6.8	346	38.4
	장애인표준사업장 (제2항)	31.4	65.1	99.5	123.7	150.9	114	75	37.2	19.7	716.5	79.6
합계		52.6	105.4	156.6	185.9	217.5	161.4	105	51.6	26.5	1,062.5	11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5조의6 제1항 및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5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 따라서 2026~2035년의 신규 인증기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7~2035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26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7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8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9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30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근 5년('19~'23)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1기업당 감면액은 2023년 신고기준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향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연차별로 유지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7.12.31. 제정된 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 기한 및 감면을 변경,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08.12.26. 일부개정: 인증취소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text{감면 한도} = 1\text{억 원} + (\text{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천만 원})$$
-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19~'23)간 감면 규모는 2019년 신고기준 65.6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85.3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 신고기준 76.3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 사업자에서 발생

[표 3]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 인 세	65.5	68.9	84.3	75.5	75.6
소 득 세	0.1	2.2	1.0	1.2	0.7
합계	65.6	71.1	85.3	76.7	76.3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2019년 391개에서 2024년 236개로 감소
 - 2019~2024년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연평균 감소율 : 8.8%

[표 4]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율
신규 사회적기업 수 ¹⁾	391	429 (9.7)	500 (16.6)	428 (△14.4)	371 (△13.3)	236 (△36.4)	△8.8

주: 1) 사회적기업포털 조회 결과('25.1.31.기준) 법인 외 개인사업자 확인 불가

2) ()안은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30년 신규 사회적기업 수를 추계한 후,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 기업 수를 추계
 - 2023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8.1%
 - '23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3.1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9.6만 개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 85.1%
 - '23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23.8만 개, 과세소득자 수: 190.5만 개
 - 2024년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100%) 및 2022 과세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99.3%)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 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5]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신규 사회적기업 수(A)	196	179	163	149	135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8.1%)	94	86	78	71	65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6]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 %)

	2024년 (1년차)	2023년 (2년차)	2022년 (3년차)	2021년 (4년차)	2020년 (5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기업 수(A)	236	371	428	500	429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236	364	404	452	375
비중(B/A×100)	100	98.1	94.4	90.4	87.4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7]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26년 인증	189	187	183	180	177				
2027년 인증		172	170	167	164	161			
2028년 인증			157	155	152	149	147		
2029년 인증				143	142	139	136	134	
2030년 인증					130	129	127	124	122

주: [표 5]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6]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3년 신고연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11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2 과세연도 1기업당 감면액(0.11억 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합계(76.31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681개)으로 나눈 값

[표 8] 개정안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26년 인증	21.2	21	20.5	10.1	9.9				
2027년 인증		19.3	19	18.7	9.2	9			
2028년 인증			17.6	17.4	17	8.3	8.2		
2029년 인증				16	15.9	15.6	7.6	7.5	
2030년 인증					14.6	14.5	14.2	6.9	6.8
합계	21.2	40.3	57.1	62.2	66.6	47.4	30	14.4	6.8

주: [표 7]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1.2억 원, 2035년 6.8억 원 등 9년간('27~'35) 총 346억 원(연평균 38.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제1항)	21.2	40.3	57.1	62.2	66.6	47.4	30	14.4	6.8	346	38.4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2010.12.27. 신설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text{감면 한도} = 1\text{억 원} + (\text{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천만 원})$$
 - (현행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19~'23)간 감면 규모는 2019년 신고기준 49.3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74.7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 신고기준 53.6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 사업자에서 발생

[표 10]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 인 세	35.5	55.7	63.3	47.5	47.3
소 득 세	13.7	16.3	11.4	7.1	6.3
합계	49.2	72	74.7	54.6	53.6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본점) 수는 2019년 82개에서 2024년 143개로 증가
 - 2019~2024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11.8%

[표 11]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율
신규 인증 표준사업장 수	82	97 (18.3)	119 (22.7)	94 (△21)	109 (16.0)	143 (31.2)	11.8

주: ()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30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2023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8.1%
'23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3.1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9.6만 개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 85.1%
'23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23.8만 개, 과세소득자 수: 190.5만 개
 - 2024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87.4%) 및 2022 과세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88.2%)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12]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A)	179	200	223	249	279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8.1%)	86	96	107	120	134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13]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 %)

	2024년 (1년차)	2023년 (2년차)	2022년 (3년차)	2021년 (4년차)	2020년 (5년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43	109	94	119	97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41	103	79	94	77
비중(B/A×100)	98.6	94.5	84.0	79.0	79.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14]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개)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26년 인증	85	81	72	68	68				
2027년 인증		95	91	81	76	76			
2028년 인증			106	101	90	85	85		
2029년 인증				118	113	101	95	95	
2030년 인증					132	127	113	106	106

주: [표 12]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13]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3년 신고연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37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2 과세연도 1기업당 감면액(0.37억 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합계(53.7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145개)으로 나눈 값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26년 인증	31.4	30.1	26.7	12.5	12.6				
2027년 인증		35	33.6	29.9	14	14.1			
2028년 인증			39.2	37.5	33.4	15.7	15.8		
2029년 인증				43.8	42.0	37.3	17.5	17.6	
2030년 인증					48.9	46.9	41.7	19.6	19.7
합계	31.4	65.1	99.5	123.7	150.9	114	75	37.2	19.7

주: [표 14]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1.4억 원, 2035년 19.7억 원 등 9년간('27~'35) 총 716.5억 원(연평균 79.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5조의6 제2항)	31.4	65.1	99.5	123.7	150.9	114	75	37.2	19.7	716.5	79.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